

전주대학교 총동창회 회칙

前 文

20C末 우리가 살고 있는 社會는 민주주의적 생활양식의 확대 속에 多元社會의 구조를 띤다.

이러한 사회는 개인의 존엄과 역할이 여전히 최고의 가치를 지니면서 또 하나의 특징인 집단주의의 징표를 나타낸다. 全州大學校 총동창회는 同校에서 동문수학하고 앞으로 계속 배출되어갈 사람들의 집합체로서 동문 서로간에 友誼와 一體感을 강화하여 母校愛를 실현하고 共同體의 체험을 통하여 성숙된 社會成員으로서의 훈련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창립되었다.

앞으로 전주대학교 총동창회가 개인에게는 보람으로 모교에는 영광으로 기여될 것을 확신하면서 나아가 國家와 社會에 有益을 더하는 모임체로써 자리잡기를 소망하고 또 이를 동창 모두가 일체로서 힘쓸 것을 다짐해 두며 1968년 제정된 회칙을 개정한다.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전주대학교 총동창회(이하 “본회”라 칭한다)라 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회원 서로간의 친목과 모교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조직) ① 본회의 사무소는 전주시에 둔다.

② 본회에 단과대학동문회와 학과별 동문회, 지역동문회, 대학원동문회를 두며 필요시 직장동문회와 연락소를 둘 수 있다.

제4조(회원) ① 본회는 전주대학교를 졸업한 자를 회원으로 한다.

② 본회는 모교에 재적한 사실이 있는 자를 준회원으로 한다.

③ 본회는 모교에서 명예박사학위를 받은 자, 유공자, 모교 장기근속자, 기타의 자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를 특별회원으로 한다.

제5조(회원의 권리의무) ① 회원은 피선거권 및 본회의 제반활동에 참가할 권리를 갖는다. 단, 준회원 및 특별회원은 피선거권이 배제된다.

② 회원은 회칙과 규정을 준수하고 회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회비납부 의무가 있다.

제 2 장 기 관

제 1 절 총 회

제6조(지위와 구성) ① 총회는 본회 최고의결기구로서 회원 전체로 구성된다.

② 총회는 참석회원으로 성립된다.

제7조(기능) 총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회칙개정
2. 결산의 승인
3. 이사회에서 부의된 안건의 처리
4. 장학재단 예·결산보고
5. 기타

제8조(소집) ①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하고 3월 중에 소집한다.

- ② 임시총회는 회장의 필요, 이사회 결의, 정회원 200인 이상의 서면소집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단, 회원의 소집요구에 기한 소집시에는 요구자의 이상이 참석되어야 한다.
- ③ 총회의 소집은 2주일 전 중앙지 또는 전북지방 일간지에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 2 절 대 의 원 회

제9조(지위) 본 회의 회장, 부회장, 감사를 선출하기 위하여 대위원회를 둔다.

제10조(구성) 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단과대학, 학과, 지역동문회 회장 각 1인
2. 부회장 3인
3. 이 사
4. 단과대학동문회에서 선출하는 대의원 약간명 (단, 4호의 경우 기본 대의원수는 3명으로 하되 회원 수에 비례하여 500명당 1명을 추가한다.)

제 3 절 이 사 회

제11조(구성)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되 총회원의 2% 이내로 구성한다.

1. 단과대학동문회가 선임하는 1인
 2. 학과동문회가 선임하는 1인
 3. 지역동문회가 선임하는 1인
 4. 각급 대학원동문회가 선임하는 1인
 5. 직장동문회 연락소에서 추천한 자로 이사회에서 승인한 자 1인
 6. 이사 정원의 범위 내에서 회장이 지명하는 자.
- ②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③ 이사회의 의장은 회장이 되며 부의장 1인을 둔다.

제12조(권한) 본 회의 의결기관으로써 이사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2. 총회에 제출한 사항
3. 회원의 포상 및 징계
4. 사업계획 및 예산승인·결산 심의
5. 특별회원의 인정

6. 연회비, 입회비, 임원회비, 부담금 결정
7. 직장동문회 및 연락소의 인정
8. 직장동문회 및 연락소에서 선임한 이사의 승인
9. 사무처장 임면 승인
10. 고문 및 자문위원 추대
11. 각종 규정의 제정 개·폐
12. 회칙 및 제 규정의 유권해석
13. 장학위원 선출
14. 기타

제13조(소집) ① 이사회는 연 2회 3월과 12월에 소집된다.

② 임시이사회는 회장의 필요, 운영위원회의 의결,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요청에 의하여 소집된다.

제 4 절 운영위원회

제14조(지위와 구성) ① 본 회 운영의 중요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회원을 포함 11인 이내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회 장 : 1인
2. 회장단에서 선임하는 부회장 : 2인
3. 이사회에서 선임하는 : 7인
4. 사무처장 : 1인

③ 운영위원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제15조(권한) ① 운영위원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의 심의·조정
2. 이사회에 회부할 사항의 심의
3. 예산의 심의
4. 중요 회무의 심의 조정
5. 긴급한 회무의 집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의 심의 조정
6. 기타 본 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② 운영위원회에서 처리한 긴급사항을 다음 이사회에 승인받아야 한다.

제 5 절 임 원 회

제16조(구성) 본 회의 집행기관으로써 다음 각 호의 구성되는 임원회를 둔다.

1. 회 장 1인
2. 부회장 약간명
3. 각 부서장

제17조(임원의 선출) 본 회의 회장, 부회장, 감사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한다.

제18조(임원의 임기) ① 본 회의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회장 께위시 3월 이내에 보선한다. 단, 잔임기간이 6월 미만일 때는 그러지 아니한다.

③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9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통할하고 각급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상임부회장,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0조(확대임원회의) 본회는 각 가관간의 조정과 협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로 확대간부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 제16조의 임원
2. 운영위원회 위원

제21조(고문) ① 전임회장이나 학식과 덕망이 있는 회원으로 약간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② 고문은 본 회의 각급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2조(자문위원) ①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1. 회장이 추대하는 모교의 전·현직 총장, 이사장
2. 본 회 유공자 중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

② 자문위원은 본 회 자문에 응하고 각 급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다.

제23조(감사) ① 본 회의에 감사를 2~3인을 두고 업무와 회계사항을 감독케 한다.

② 감사는 정기 또는 수시로 감사를 행하여 이사회에 보고할 수 있으며, 매 회계년도의 업무 및 회계감사를 필한 후에는 정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 6 절 사 무 처

제24조(구성) ① 본 회의 회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 처장 1인을 두며 필요시 부를 둘 수 있다.

③ 사무처의 기구, 기능 및 업무분담, 기타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25조(사무처장) ① 사무처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지시를 받아 모든 회무를 집행한다.

② 사무처장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제26조(사무처) ① 사무처의 각부는 필요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② 각 부장은 사무처장의 제청으로 회장이 임명하며, 필요시 이사회 결의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사무원) ① 사무처에 사무원 약간을 둘 수 있다.

② 사무원은 업무의 전문성과 사무처의 중립성을 고려하여 회장 개선시에도 본 회 발전을 고려하여 회장 개선시에도 본 회 발전을 저해하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그 신분을 보장한다.

③ 사무원의 임면, 복무, 기타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 7 절 장학위원회

제28조(지위) 전주대학교 총동창회 장학재단의 전반에 관한 지휘와 감독을 위하여 장학위원회를 둔다.

제29조(구성) ① 장학위원회는 위원장, 상임위원, 위원으로 11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장학위원회의 기구·기능·기타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30조(선출) ① 장학위원회 위원장은 회장이 된다.

② 상임위원과 위원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제31조(겸임) ① 장학위원회 위원장은 장학재단 이사장을 겸임한다.

② 상임위원은 장학재단 상임이사를 겸임한다.

③ 장학재단 이사 정수의 2분의 1 이상을 본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파견한다.

제32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 3 장 산 하 조 직

제33조(단과대학동문회) ① 본 회에 단과대학동문회(이하 단대동문회)를 두고 그 안에 학과동문회를 설치한다.

② 단대동문회, 학과동문회의 조직과 운영은 본 회칙에 따라야 한다.

③ 대학원동문회를 두되 단대동문회 규정을 준용한다.

제34조(지역동문회) ① 지역에 지역동문회를 둔다.

② 그 조직과 운영은 단대동문회와 같다.

제35조(연락소 기타) ① 필요시 지역 및 직장에 연락소 및 직장동문회를 설치 운영한다.

② 연락소와 직장동문회에 연락소장과 분회장을 둘 수 있다.

제 4 장 회 칙 개 정

제36조(발의) 회칙개정은 회장, 운영위원회 의결, 회원 100인 이상,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의 서면요구로 발의된다.

제37조(의결) 총회에서 참석회원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5 장 포상과 징계

제38조(포상) 본 회 발전에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회원 또는 사람, 단체에게 이사회의 결의로 포상할 수 있다.

제39조(징계) 본 회 또는 모교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한 자는 출석이사 3분의 2이상의 의결로써 다음과 같이 징계할 수 있다.

1. 경고
2. 공개사과
3. 회원 자격정지
4. 직위해제

제 6 장 보 칙

제40조(정족수) 각급 회의는 회칙이 다른 규정이 없으면 출석인원으로 개의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1조(재정) ① 본 회의 수입은 입회비, 일반회비, 부담금, 찬조금, 기타 사업수익금으로 이루어진다.

②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2월 말일로 한다.

③ 회계년도 개시 후 예산이 의결되지 않았을 경우의 경상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지출한다.

제42조(포괄위임) ① 본 회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하고, 내규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관례에 의한다.

② 본 회칙의 해석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사회의 유권해석에 따른다.

부 칙

① (경과조치)

1. 본 회칙 발효전에 집행된 사항은 본 회칙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2. 활동 중인 직장동문회와 그 이사는 본 회칙의 승인에 의한 것으로 본다.
3. 현행 자학재단 이사회의 설치와 기운영은 본 회칙 장학위원회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 (회칙개정과 발효) 본 회칙은 1992년 5월 23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③ (시행일) 이 개정회칙은 1993년도 임원 선출 이후의 임원선출부터 적용한다.

④ (시행일) 이 개정회칙은 1994년 5월 5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⑤ (시행일)

1. 이 개정회칙은 1999년 5월 5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 (경과조치) 이 개정회칙의 제41조(개정) 제1항의 회계연도는 1999회계연도에 한하여 1999년 4월 1일부터 2000년 2월 말일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0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